

4·3과 10·19, 비교연구를 위한 초국경적 상상력과 과제*

고성만**

- I. '과거청산'의 일국사적 유산
- II. '쌍둥이 사건' 해결의 방법론적 모색
- III. GHQ/SCAP 보고서에 기재된 여수·순천 출신 '불법입국자'
 - 1. 경계를 넘는 이동
 - 2. 여수 사람들의 '불법입국'
 - 3. 순천 사람들의 '불법입국'
- IV. 초국경적 10·19 연구의 과제와 방법

국문초록

4·3의 경우, 일본행 밀항을 모색했던 사람들의 존재는 공적영역의 과거사 해결에서 주된 관심사가 아닐뿐더러, 엄밀한 의미에서 4·3사건법이 정의하는 '제주4·3사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국가의 경계 혹은 그 너머로 흩어져 버린 사람들의 초국경적, 디아스포라적 경험도 비가시화되어져 왔다. 4·3사건법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여순사건법 체제 역시 이러한 '제주4·3사건'의 경계와 한계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이 논문은 초국경적 연구의 가능성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 이를 위해 국민국가의 경계 바깥으로의 이동을 명징하는 기록들의 적극적인 해석과 비판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이다(NRF-2022S1A5C2A02093677).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wikigarden@gmail.com

적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불법입국자’ 보고서에는 1948년 8월 쓰시마(対馬)와 사가현(佐賀県) 해안가에서 붙잡힌 여수·순천 사람들의 신상정보가 확인된다. 국가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달리 바깥 혹은 틈새에 끼어 있는 사람들의 다른 환경과 처지를 고려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사’로 수렴되는 ‘사건’과 ‘희생자’에서 자유로운 질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10·19는 4·3과 별개일 수 없다. 이 논문은, 초국경적 연구의 가능성과 과제는 제주와 여수·순천을 비롯한 한반도 남부 지역, 그리고 옛 식민지 본국과 동북아시아를 가교하는 트랜스-로컬 역사의 방법론으로 기획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 4·3, 10·19, 초국경, 불법입국자, 비교연구

I. ‘과거청산’의 일국사적 유산

4·3 시기 일본행을 시도했던 사람들의 존재와 경험은 지난 20여 년 간 전개되어온 공적영역의 과거사 해결에서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¹⁾ 엄밀히 따져보면, 국가와 국경, 국적, 국민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들의 이동 경험과 이후의 삶은 4·3사건법에서 ‘정의’되는 ‘제주4·3사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²⁾

먼저, ‘사건’의 ‘기점’과 종점이 각각 ‘1947년 3월 1일’과 ‘1954년 9월 21일’로 구획됨으로써, 7년 7개월여에 집약되기 어려운 ‘아시아에서 가

1)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 역시 체험자의 증언을 인용할 뿐, 그 시기 제주를 탈출하여 일본행을 모색했던 사람들의 경험과 역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 문경수·고성만, 「1948 일본행 엑소더스-연합국 최고사령부 보고서를 통해 본 제주 사람들의 밀항」, 『日本学』 58, 2022, 61-81쪽.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다.

장 포괄적으로 잊혀진 대량 이주³⁾,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만들어진 해방 전후의 다양한 이동⁴⁾에 대한 상상을 어렵게 한다.⁵⁾ 또한 법은 ‘희생’의 공간적 범주를 ‘제주도’로 한정함으로써, 제주/한국 바깥으로 탈출, 피신했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동성과 장소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과거청산’ 프로그램 역시 실종된 사람들을 ‘행방불명자’로 승인하고 기념비에 각명할 뿐, 개개인의 ‘행방불명’ 이후의 행방을 추적하는 일을 방기함으로써 그들이 고군분투하며 모색했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구체적인 동선을 밝히려는 시도에 무관심하다.⁶⁾ 시기와 장소뿐 아니라, ‘사건’의 내용 또한 ‘소요사태’와 ‘무력 충돌⁷⁾, ‘진압과정의 희생’으로 포괄됨으로써 4·3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사람들의 다종다양한 내력을 정형화시키고 인식의 범주를 한정해 버린다.⁸⁾

3) Morris-Suzuki, Tessa, 2011, “Guarding the Borders of Japan: Occupation, Korean War and Frontier Controls”,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9-8-3.

4) 伊地知麻紀子, 「濟州四・三と市民運動-ローカルな和解実践」, 『和解をめぐる市民運動の取り組み—その意義と課題』, 明石書店, 2022, pp.227-256.

5) ‘사건’의 중점은 ‘희생자’를 심의하데 있어서도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한다. 1956년 5월 서귀포시 남원리 목장지대에서 폭발물에 의해 사망한 10세, 13세 어린이의 ‘희생자’ 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2년 7월 20일 열린 제주4·3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는 이들의 사망 시점이 4·3 사건법에 명시된 4·3사건 외의 시기라는 점에서 희생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폭발물에 죽은 10살~13살 꼬마들이 4·3희생자 결정 왜 보류됐나」, 『제주의 소리』, 2022.7.22.

6) 고성만, 「KIN Gen-chin 찾기-1948년 영연방 점령군 보고서에 기재된 제주 출신 ‘불법입국자’ 분석」, 『濟州島研究』 57, 2022a, 49-70쪽.

7) 이재승에 따르면, ‘충돌’ 역시 4·3사건법만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보기 어렵다. “제주4·3항쟁을 1948년 8월 15일 주권(통치권) 교체를 기준으로 고찰한다면 8월 15일 이전 미군정과 점령지 주민 간의 충돌은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 점령법의 문제이지만, 그 이후 충돌은 정부와 봉기세력 간의 순전한 국내법적인 사안이다.” 이재승, 「제주4·3사건, 민족자결권과 저항권」, 『비판적 4·3 연구』, 한그루, 2023, 39쪽.

8)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획된 연구 용역(최환용 외, 2021,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도 국가 및 국민 바깥의 존재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4·3사건법과 ‘과거청산’이 파편화된 말과 억압된 기억, ‘뒤엉킨 관계’를 공적영역에서 재구성하고 의미를 찾는 데 기여해 왔지만, 일련의 작업이 국가와 국경, 국적, 국민의 경계 안에서 국민국가 성립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묻는 작업과 밀접하게 연동되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으로 수렴되는 과거사 해결 방식이 일국사적 관점에 입각했던 탓에 가령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⁹⁾와 같은 구호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월경(cross-border)이라는 선택지를 구사하며 국민국가의 경계 혹은 그 너머로 흩어져 버린(離隔) 초국경적, 디아스포라적 경험과 기억은 비가시화되어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가 ‘과거청산’의 시야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체험자들의 증언이 공개되고, 재일제주인을 주축으로 하는 초국가적, 초민족적 시민운동이 한국사회에 전파됨에 따라,¹⁰⁾ 2021년 한 해 4·3사건법이 두 차례 개정되면서 시행되는 ‘추가진상조사’에 ‘재일제주인 피해 실태조사’가 포함되기에 이르렀다.¹¹⁾ 그러나 ‘추가’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청주의 방식으로 재구성된 ‘희생자’, ‘유족’을 대상으로 조사가 설계되면서 당시 섬을 떠나 일본 곳곳으로 잠입

9) 김동현은 이러한 슬로건이, 반공국가 ‘대한민국’을 거부했던 4·3항쟁의 기억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역사로 기입될 수 있을지라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거세한다며 비판한다. 김동현, 「반공주의와 ‘개발’의 정치학-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65, 2019, 45-72쪽.

10) 정아영, 「일본의 4·3사건 추도 사업과 재일동포 2세들의 체험과 사상」, 『4·3과 역사』 9·10, 각, 2010; 고성만, 「화해와 상생의 (불)가능성에 대하여-제주 4·3의 ‘과거청산’과 ‘희생자’의 정치학」, 『분단생태계와 통일의 교량자들』, 한국문화사, 2017; 伊地知麻紀子(2022), 앞의 글.

11) 제주4·3위원회의 추가 진상조사 과제 가운데는 ‘행방불명 피해실태’와 ‘재일제주인 피해실태’도 포함되어 있다.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 속도낸다」, 『한국일보』, 2022. 1. 10. 재일제주인 피해실태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7월 일본 현지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위촉해 증언조사를 실시했다. 14년 7월 연구원 3인이 신규 위촉되어 같은 해 12월까지 도쿄, 오사카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15년 4~8월에는 대마도를 비롯하여 일본 전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총 118명에 대한 증언조사를 완료했다.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 2019.

했던 사람들을 비롯하여 신청주의 구조 바깥의 미신고자/비신고자들을 추적하는 작업에까지는 미치지 어렵게 됐다.

‘보상금’에 관한 법제도 역시 그들을 재외국민으로 좁게 한정된 까닭에 한국 국적 유무에 따라 선별의 정치와 위계질서가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4·3사건법 16조의2에 따라 설치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접수처’가 한국과 일본, 북한 등을 가교해온 초국적 혹은 무국적 가족의 성원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이다.¹²⁾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다양한 이동’¹³⁾이 일국사적 ‘과거청산’의 잣대로 재평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 상황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국민국가의 경계 바깥으로의 이동을 명징하는 기록들의 적극적인 해석과 비판적 분석이야말로 ‘과거청산’의 일국사적 유산을 문제시하는 데 유효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는 데 있다.

II. ‘쌍둥이 사건’ 해결의 방법론적 모색

‘완전한 해결’¹⁴⁾, ‘정의로운 해결’을 쟁점으로 앞당기려는 과정에서

12) 고성만, 「제주 4·3 모델의 (불)가능성과 남은 과제들」, 『창작과비평』 195, 창비, 2022b, 411-423쪽. 제주4·3평화재단(2019, 앞의 책) 역시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일본 등 제주도 이외 지역 거주자들의 저조한 신고를 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거사 해결 방식은 제주4·3위원회 실무위원장이기도 한 제주지사가 일본에 거주하는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재확인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어 ‘외교부와 협의해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피해 신고나 보상금 신청에 관련한 증명서 발급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 관광교류국 보도자료, 「“4·3 정의로운 해결 재일본 희생자·유족 소외 안 돼”-오영훈 도지사, 통국사 위령비 참배 및 유족 간담회 개최」, 2023. 1.30.

13) 伊地知紀子(2022), 앞의 글.

14)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표현이 언론을 통해 회자되기 시작한 시기는 대체로 2006년경이다. 고경민,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건과 과제」, 『제주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3. 김동현(2019, 앞의

일국사적 유산을 문제시하는 질문이 결락되는 사태는 ‘제주4·3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2022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식화된 ‘여수·순천10·19사건’의 경우에도 재현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두 사건은 ‘닭은꿀’, ‘판박이’, ‘쌍둥이’ 등으로 불리어져 왔다. 이러한 관계짓기가 개별적이고 분절적으로 인식되어 오던 두 사건의 역사적 맥락과 관계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중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실제 4·3사건법이 전부 개정된 직후에는 곧바로 “다른 지역 과거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¹⁵⁾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첫 입법적 보상”¹⁶⁾이라는 의의로 인해 10·19의 ‘과거청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4·3사건법이 2.0버전으로 갱신되는 과정에서,¹⁷⁾ 10·19 해결의 가이드라인이 출현하는 징후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주무부처 장관,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언론까지 한목소리로 4·3사건법을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¹⁸⁾으로, 보상 조항을 “과거사 사건 피해자 보상 기준의 선례”¹⁹⁾로 의미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인 전승과 탈맥락화된 답습을 통해 ‘쌍

글에 따르면, 미디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표현의 문제점은 ‘완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는 데 있다. 또한 ‘완전한 해결’이라는 용어에는 해결의 계속된 지연이 내포되어 있다.

- 15) 「오영훈 의원, 마침내 “제주4·3 희생자 보상 규정 담은 ‘제주4·3’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한뉴스』, 2021.10.28.
- 16)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행정안전부, 「제주4·3희생자 보상 실시, 과거사 문제 완결을 위한 한 걸음」, 2021.10.28.
- 17) 법률 개정 작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자임했던 이재승은 4·3사건법의 전부 개정을 ‘진상조사법에서 피해구제법으로의 대전환’으로, 개정 법률안을 ‘제주4·3법의 2.0버전’으로 의미 부여했다. 「비극은 평화와 만나야 한다」, 『한겨레21』 1204호(제주4·3 70년 특집호), 2018.3.26.
- 18) 2022년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 「문재인 “4·3사건법 공포…70년 만에 정의실현 다행”」, 『제주의소리』, 2022.1.4.
- 19) 2021년 9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해철 장관 발언. 「보상 길 열린 ‘노근리 사건’ 유족 “치유 늦었지만 환영”」, 『한겨레』, 2021.9.29. 참조.

등이 사건의 해결법이 모색될 수 있을까? 어쩌면 ‘제주4·3사건’이라는 선례는 ‘여수·순천10·19사건’의 역사적 특수성과 사회적 현실에 바탕을 둔 밑으로부터의 ‘과거청산’이 추동될 기회를 생략시키는 빌미로 원용되지 않을까? 차이는 불분명해지고, 고유하고 독자적인 ‘과거청산’의 사상과 문화, 전략과 방법론이 모색될 가능성 역시 차단되지는 않을까?²⁰⁾ 때문에 그러한 빠른 연결 시도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두 사건의 역사적 관계 형성을 왜곡시키지는 않을까?

4·3 ‘과거청산’의 궤적과 성과가 이제 막 닳을 올린 여순사건법 체제에 설익은 선례로 작용해 버릴 가능성은 ‘제6조(신고처 설치 및 공고)’에서도 엿볼 수 있다.²¹⁾ ‘제주4·3사건’과 마찬가지로 ‘희생자’, ‘유족’ 신고를 위한 신고처를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거청산’의 법제도가 디아스포라적 존재들을 재외국민으로 협소화하기 때문이다.²²⁾

‘희생자(특히 행방불명자)’, ‘유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국가 바깥으로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은 고무적이지만, 사건의 외증 혹은 그 이후에 당사자들의 처한 사정에 따라 조선적(朝鮮籍)과 같은 무국적을 유지하거나 재외공관을 두지 않는 비수교국의 국적자 및 거주자로 전환할 경우, 그들까지 법제도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²³⁾

20) 고성만(2022b), 앞의 글, 412-413쪽.

21) 2000년에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여섯 차례 개정된 4·3사건법과 비교할 때, 직권조사(여순사건법 3조8항)와 동행명령(같은 법 8조)에 관한 조항이 눈에 띄고 ‘유족’의 범주 역시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순사건법과 시행령은 4·3사건법과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절충하고 위원회 구성과 조직 운영 방식은 4·3의 사례를 준용한 결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철희,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완전한 과거사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위한 향후 과제’ 포럼 자료집, 2022, 38쪽.

22) 여순사건법 제6조(신고처 설치 및 공고)는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4·3사건법 제9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남북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은 재일동포들이 적지 않으며,²⁴⁾ 그 가운데 많은 수의 미신고자, 비신고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 문경수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신고처를 두는 규정은 한국전쟁 당시의 국군이나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과거사 청산 관련 입법에는 볼 수 없는 규정으로 그 자체로 재일 동포사회와의 깊은 연관성을 의미한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산하 제주인의 피해실태조사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²⁶⁾

흩어져 버린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한 노력은 38도선 이북 지역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한국의 법제도와 정부 위원회의 역량만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1971년 이래 북한 조선적십자회와 이산가족 명단을 공유해 온 대한적십자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²⁷⁾

여순사건법 2조(정의)에 명시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의 발생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을 상정할 수 있지만, 사건의 당사자들은 이들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과 북한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이 사건을 축소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²⁸⁾ 4·3사

23)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4·3위원회가 심의·결정한 희생자(14,539명)의 유족(81,160명) 가운데 일본에 거주하는 유족은 9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 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 등, ‘제주4·3법 시행령 개정에 즈음한 재일4·3단체 공동기자회견’ 회견문, 2022.3.17.

25) 문경수, 「4·3과 재일제주인 재론(再論)-분단과 배제의 논리를 넘어」, 『4·3과 역사』 19, 각, 2019.

26) 제주4·3평화재단, 「재일제주인 4·3피해조사-오사카를 중심으로」, 2014(미간행), 71쪽; 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 등(2022), 앞의 글 재인용.

27) 실제 4·3의 경우에도 제주에 거주하는 유족이 근친자를 4·3위원회에 신고하여 ‘희생자로 승인받은 이후에,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북측에 동일 인물이 생존해 있다는 연락을 받아 상봉한 경우가 있다. “65년 만에 형님을 만날 수 있다니 꿈만 같습니다”」, 『제주일보』, 2014.2.23. 김여경에 따르면, 여러 세대에 걸쳐 ‘식민지 조선-일본-북한-일본’이라는 경로를 이주했던 재일탈북자들의 경험 역시 4·3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여경, 「조국이란 무엇인가-귀국 1.5세 재일탈북자의 구술사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8-1, 2017.

건법과 마찬가지로 여순사건법은, 10·19를 계기로 재외공관 혹은 재외국민의 경계보다 더 먼 곳에 있을지 모를 사람들을 ‘여수·순천10·19사건’의 당사자로 인식하기 어렵게 한다.²⁹⁾

Ⅲ. GHQ/SCAP 보고서에 기재된 여수·순천 출신 ‘불법입국자’

1. 경계를 넘는 이동

두 사건의 법제도가 초국경적, 디아스포라적 존재들을 인식 밖에 두거나 재외국민으로 좁게 한정함으로써 상승하는 ‘과거청산’의 일국사적 특성과 함께, 최근 들어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다양한 이동’³⁰⁾을 명징하는 기록들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GHQ/SCAP)가 체포된 ‘불법입국자(illegal entrants)’를 기록한 보고서도 그중 하나이다.³¹⁾

28) 최관호는 사건 시기 일본으로 도피한 사람들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0·19사건의 피해는 여수·순천에 한정되지 않으며, 여순사건법이 10·19사건을 축소한다고 지적한다. 최관호, 「10·19사건법의 내용과 문제점」, 『민주법학』 77, 2021, 24쪽. 송혜림 역시 법의 한계를 지적한다. 송혜림, 「법은 국가폭력에 대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가—제주 4·3 재심청구 2차 재판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201, 2022.

29)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여수·순천 10·19사건’을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30) 伊地知紀子(2022), 앞의 글.

31) GHQ/SCAP의 다른 자료에는 479명을 태운 15척의 선박이 48년 5~12월에 제주에서 출발한 후 규슈(九州) 각지에 도착했지만, 그중 387명이 체포되어 송환됐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GHQ/SCAP Record RG331 “Statistical Report on Illegal

‘제국일본’ 해체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던 1952년까지, 일본 본토의 국경 관리는 GHQ/SCAP이 총괄했다. 특히 구 식민지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했던 규슈(九州)와 시코쿠(四国) 지역의 국경 관리는 별도 영연방 점령군(BCOF)에 할양될 정도로 이 시기 많은 수의 밀항과 밀수가 보고된다. 1948년을 전후로 작성된 GHQ/SCAP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 남부 해안지역의 Fusan(부산)과 Masan(마산), Toei(통영), Reisui(여수), Kyosaito(거제도) 등을 비롯하여 Saishuto(제주도)와 Formosa(대만), Ryukyu(류큐/오키나와)에서 출항한 배가 이 지역에서 나포된 사례가 빈번했다.

보고서 곳곳에 등장하는 여수·순천 사람들은 GHQ/SCAP의 대일 점령정책을 교란하는 존재로 기록된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일본행은 해방과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의 혼란과 상흔의 접경성 및 초지역성을 명징할 뿐 아니라, 이들 지역이 1945년 이전부터 형성되어온 ‘국경을 넘는 생활권’³²⁾에 다름 아니었음을 역설한다. 실제 체포된 사람들의 대다수가 목적지로 식민지 시기부터 많은 수의 조선인이 거주해온 교토(京都)와 효고(兵庫), 오사카(大阪), 나라(奈良) 등 간사이 지역을 꼽았다.

따라서 GHQ/SCAP 보고서는 10·19를 전후한 시기에 국외, 특히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행방/불명을 규명하는 데에도 필수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자료이다. 또한 재외공관을 거점으로 이루어질 ‘진상규명을

Entry into Kyushu and Adjacent Island.” June 22.1948. 伊地知聡子·村上尚子, 「解放直後・濟州島の人びとの移動と生活史—在日濟州島出身者の語りから」, 『日本帝国をめぐる人口移動の国際社会学』, 不二出版, 2008, pp.87-146에서 재인용. 또한 GHQ/SCAP 시코쿠(四国) 민사국에 보고된 ‘불법입국자’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같은 해 8~12월 사이에 검거된 139명 가운데 제주 출신자가 84명으로 가장 많다. GHQ/SCAP, Civil Affairs Section, Shikoku Civil Affairs Regions : Illegal Entrance Rpt & Smuggling. Jul 1949. 朴沙羅, 『外国人をつくりだす: 戦後日本における「密航」と入国管理制度の運用』, ナカニシヤ出版, 2017에서 재인용.

32) 梶村秀樹, 「定住外国人としての在日朝鮮人」, 『思慕』 734, 1985, p.26; 伊地知聡子, 「定住と非定住の位相—濟州島からの移動/濟州島への移動とともに—」, 『市大社会学』8, 2007, pp.1-16; Morris-Suzuki, Tessa, Invisible Immigrants: Undocumented Migration and Border Controls in Early Postwar Japan,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006, 32-1.

위한 신고'(여순사건법 5조)³³⁾나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같은 법 시행령 10조)가 필연적으로 초래할 공백을 선견하는 기획에도 유용할 수 있다.

이 논문의 관심은 4·3의 '과거청산'에서도 검토를 소홀히 했던 밀항자 명부에 있다. 그 가운데서도 「GHQ/SCAP Report 3108」은 1948년 5월에서 9월까지 나가사키(長崎)와 가고시마(鹿児島), 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구마모토(熊本) 등 각지에서 작성되어 Kyushu Military Government Region(규슈 군정부)를 통해 Commanding General, Headquarters Eight Army(제8군 사령관)에 제출된 300여 건의 '불법 입국' 관련 보고서이다.³⁴⁾ 보고서에 기재된 여수·순천 사람들의 밀항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초국경적 '과거청산'의 가능성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여수 사람들의 '불법입국'

「GHQ/SCAP Report 3108」 가운데서도, 외국인 등록령 공포 직후에 발령된 작전지령 '불법입국 및 밀수에 관한 통지'(1947년 5월 24일자)에 따라, Nagasaki Military Government Team(나가사키 군정부)이 규슈 군정부 지휘관에게 보낸 48년 8월 25일자 보고가 주목할 만하다. 'Illegal Entry'(불법 입국)라는 제목의 보고에는 본적지가 여수로 표기된 주민 18명의 기록이 확인된다.³⁵⁾

33) 신청주의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여순사건법은 '위원회는 진상규명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제3조의8)는 조항을 두고 있다. 여순위원회 소위원장인 주철희 역시 "유족 1세대마저도 살아 계신 분이 많지 않고 당시의 참혹함을 기억하기 싫어 지역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 신고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여순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 규모와 피해자를 발굴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레 여순항쟁 피해자 2천명 육박」, 『노컷뉴스』, 2022.7.21.

34) 1946년 7월이 되어서 정비되는 GHQ의 지방조직은 일본을 8개 지구로 구분한 군정부(Regional Teams or District Teams)와 하위의 45개 도도부현(都道府県) 군정부(Prefectural Teams)로 구성된다.

35) 그밖에 Hojyo-gun(보성군), Koko-gun(고흥군), Koshin-gun(강진군), Koshu-gun(광

〈표 1〉 Yutoku-maru 탑승자 14명 중 본적지를 여수로 밝힌 13명

이름	나이	구분	본적지	도항 목적
TEI ZAIKO	39	passenger	#1013 Men-cho, Reisui-yu, Reisui-gun, Zenranando	to visit his nephew in Kyoto and to smuggle in 40 yds cotton cloth; paid ¥5,000 to the captain. Apprehended together with KIN SANBUN.
CHIN SOGYO KU		passenger	#133, Nishi-machi, Reisui-yu, Reisui-gun, Zenranando	to visit his cousin living in Hyogo-ken and to smuggle in 40 yds cotton KIN SANBUN.
KO SANJYU	39	passenger	#179 Masan-cho, Reisui-yu, Reisui-gun, Zenranando	to see his family in Osaka and to smuggle in 40 yds cotton cloth; paid ¥6,000 to the captain. Apprehended together with KIN SANBUN.
RIN DAITA KU	49	passenger	#15, Nishi-machi, Reisui-yu, Reisui-gun, Zenranando	to visit his cousin in Osaka City and to smuggle in 40 yds cotton cloth; paid ¥5,000 to the captain. Apprehended at 2015 hrs 10 Aug 48 a point 1 mile off Oaza Tsutsu, Tsutsu-mura, Tsushima.
KYO YOHAC HI	30	passenger	Nishi-machi, Reisui-yu, Reisui-gun, Zenranando	to go to Ehime-ken where he was born and to smuggle in 65 yds cotton cloth; paid ¥5,000 to the captain. Apprehended at 2015 hrs 10 Aug 1948 at a point 1 mile off Oaza Tsutsu, Tsutsu-mura, Tsushima.
BUN HOSHU	26	passenger	Tokuyo-ri, Reisui-yu, Reisui-gun, Zenranando	due to hard living conditions in Korea to come and live in Japan and also to smuggle in 300 yds cotton cloth; paid ¥5,000 to the captain. Apprehended at noon 11 Aug 48 at Kuta, Kuta-mura, Tsushima.
KIN SEIKO	28	passenger	Masan-cho, Reisui-yu, Reisui-gun, Zenranando	to visit his brother living in Tokyo and to smuggle in 100 yds cotton cloth; paid ¥5,000 to the captain KIN SANBUN. Apprehended at noon 11 Aug 48 at Kuta, Kura-mura, Tsushima.

주군, Koyo-gun(광양군), Kyurei-gun(구례군), Rashu-gun(나주군)을 본적지로 밝
힌 사람들도 다수 확인된다.

이름	나이	구분	본적지	도항 목적
SHU KOSHO KU	40	passenger	Nishi-machi, Reisui-yu, Reisui-gun, Zenranando	to visit his son living in Takamatsu-shi and to smuggle in 22 spoons and some chopsticks; paid ¥6,000 to the captain. Apprehended at noon 11 Aug 48 at Kuta, Kuta-mura, Tsushima.
BUN KIGYO KU		passenger	Shinpo-ri, Ritsuson-men, Reisui-gun, Zenranando	to visit his son living in Hakata, Fukuoka; paid ¥5,000 to the captain. Apprehended at 2015 hrs 10 Aug 1948 at a point 1 mile off Oaza Tsutsu, Tsutsu-mura, Tsushima.
KIN KANHY U	39	crew member	To-ri, Reisui-yu, Reisui-gun, Zenranando	to get a job in Fukuoka-ken where he lived before; no fare paid. Apprehended at 2015 hrs 10 Aug 1948 at a point 1 mile off Oaza Tsutsu, Tsutsu-mura, Tsushima.
KIN HOSEKI	34	passenger	Shinpo-ri, Ritsusan-ken, Reisui-gun, Zenranando	to live in Yahata-shi where he lived before; paid ¥5,000 to the captain. Apprehended at noon 11 Aug 48 at Kuta, Kuta-mura, Tsushima.
TEI SAIICHI	40	passenger	#11 Kowa-to, Reisui-yu, Reisui-gun, Zenranando	to take back to Korea the ashes of his dead parent kept in Nara-ken, Japan; paid ¥10,000 to the captain. Apprehended at 1500 hrs 11 Aug 48 at Kuta, Kuta-mura, Tsushima.
KO SANEI	14	passenger	Kowa-to, Reisui-yu, Reisui-gun, Zenranando	to visit his mother living in Osaka-fu; no fare paid. Apprehended at 1500 hrs 11 Aug 1948 at Kuta, Kuta-mura, Tsushima.

13명의 여수 주민을 태운 밀항선이 나포된 것은 48년 8월 10일 쓰시마(對馬)에서였다. 선박명은 Yutoku-maru.³⁶⁾ 중량은 2t, 엔진은 8마력(세미디젤식)으로 기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적항은 여수이고, 선박은 같은 달 7일 22시 Makinoshima(영도)에서 출항했다. 중간 정박 없이 후쿠오카현(福岡縣)의 하카타(博多)로 향하던 중, 10일 16시에 쓰시마 쿠다촌(久田村)의 야스가미(安神) 해안에서 탑승자 몇 명을 하선시킨 뒤에

36) 祐徳丸(우덕환)으로 추정된다.

나포됐다.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above named Koreans indicates that, there were no other passengers aboard'라는 내용으로 보아 탑승자 모두 붙잡힌 것으로 추측된다. 압수된 화물은 27만5천엔 상당의 면직물 665야드(yds)와 14만엔 상당의 커피 캔 14개, 숟가락 22개와 젓가락 몇 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주와 선장은 동일 인물로, 본적지를 Sanzenpo-Yu (삼천포읍)로 밝힌 KIN SANBUN(45세, 남성)이다.³⁷⁾ 그는 한국인 밀수업자들과 밀항자들을 일본으로 수송하고, 40야드의 면직물과 미국산 커피 14캔을 밀수한 혐의로 체포됐다. 10일 20시 15분경 쓰시마 쓰쓰촌(豆酸村) 오아자쓰쓰(大字豆酸)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다는 기록으로 보아, 배가 나포된 이후에도 4시간여 동안 도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된 승무원 1명과 승객 12명은 10~40대로 모두 한국인 남성이었다. 도항지로 간사이 지역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에히메(愛媛)와 도쿄(東京), 다카마츠(高松), 후쿠오카(福岡), 규슈로 진술했다. 도항 목적으로는 일본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태어났던 혹은 예전에 살았던 곳으로 가기 위해, 한국에서의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업을 구하기 위해, 돌아가신 부모의 유골을 가져가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특이한 점은 승객 대부분이 밀수에 연루된 것으로 기록됐다는 점이다. 밀수를 목적으로 허위의 도항 목적을 진술한 것인지, 밀항을 위해 밀수선을 타야 했던 것인지의 여부는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이 외에도 <표 2>와 같이 여수 출신자 5명이 개별적으로 '불법입국자'로 체포된 기록이 확인된다.

37) '김삼문' 혹은 '김산문', '김찬문' 등으로 추정된다.

〈표 2〉개별적으로 체포된 여수 출신자 5명

이름	나이	구분	본적지	도항목적
Hyo Genfuku				departed from Reisui, 27 June 48, with 8 illegal entrants aboard. No cargo was carried, no stops or layovers were made enroute. He landed at Sasebo Harbor Nagasaki-ken. He was apprehended at Nokonoshima, Fukuoka, 16 August 1948, and is now in the custody of the Nishi Fukuoka Police Station. The ship and crew escaped after landing illegal entrants.
Cho Zaikon	27		Hanzan-ri, Reisui-gun, Zenranando	
KIN Toman	40		Higashi-machi, Reisuiyu, Reisui-gun, Zenranando	To take his elder sister KIN Yubun, Nishinari-ku, Osaka-shi, back to korea. 7,000 yen to a certain
KIN Yobu	23		Shingetsuri, Reisui-gun, Zenranando	To work at KIN Yogan's at Tokyo-to. 10,000 yen to a certain captain. port of Embarkation; Reisui Port
KO SRIKI	33	passenger	#22 Nishi-machi, Reisui-yu, Reisul-gun, Zenranando	due to hard living conditions in Korea came over to Japan in August last year, and since then had been working as a laborer in Osaka-shi; paid ₩5,000 to the captain. Apprehended at 2200 hrs 1 August 1948 at Shitaga, Mine-mura, Tsushima, Nagasaki-ken. port of embarkation; Reisui-harbor, Korea

3. 순천 사람들의 ‘불법입국’

규슈 군정부가 작성한 48년 8월 12일자 ‘Illegal Entry and Smuggling’ (불법 입국과 밀수)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본적지가 Junten(순천)으로 기재된 주민 26명의 기록이 확인된다. <표 3>과 같이 18명은 54명이 타고 있던 배에서 한꺼번에 붙잡혔다.

〈표 3〉 ‘Shirakawa’ 소유 선박에 탑승했던 54명 중 본적지를 순천으로 밝힌 18명

이름	나이	성별	본적지	도항목적
CHO Hoshu	24	male	Senheiri, Seimen, Juntan-gun, Zenranando	To see elder brother at Hirahisa machi, Fukagawa-ku, Tokyo. 8,000 yen to a certain captain
KANAT Maseichi	27	male	Otemachi, Juntenyu, Juntan-gun, Zenranando	To live in Japan depending upon younger brother residing t HiraOka-mura, Kawachi-gun, Osaka-fu. 2,000 en to a certain captain.
KIN Shoshaku	19	male	Otemachi, Juntenyu, Juntan-gun, Zenranando	To find a job in Japan depending upon elder brother at Senzoku-machi, Asakusa-ku, Tokyo-to. 10,000 yen to KIN Ryokan, stowaway broker.
RI Kochin	19	male	107, chosendo, Juntenyu, Juntan-gun, Zenraneando	To take his elder brother RI Kogen at Itabashi-machi, Itsbashi-ku, Tokyo-to, back to korea. 10,000 yen to a certain vessel-owner.
BUN Junzo	44	male	87, Renkori, Kairyumen, Juntan-gun, Zenranando	To live with his son at nisgio-machi, Hazu-gun. Aichi-ken. 5,000 yen to a certain captain.
KO Nanshak u	33	male	Juntan-gun, Zenranando (others, unknown)	To work again in Japan (formally lived in Osaka-shi). 5,000 yen to a certain vessel-owner.
CHO Shugyo	18	male	Togairi, Juntan-yu, Juntan-gun, Zenranando	To see younger brother and sister in Shimane-ken. 4,100 yen to a certain captain.
KIN Komei	49	male	kinkokuri, Juntenyu, Juntan-gun, Zenranando	To live and work again in Japan (he had lived in Japan before). 2,000 yen to a certain captain.
RI Fukumen	24	female	Seizanmen, Juntan-gun, Zenranando	To live with her husband, in Okayama-ken, accompanying daughter KIM Junko. 3,000 yen to a certain captain.
RI Junko	3	female	Seizanmen, Juntan-gun, Zenranando	Accompanied by mother RI Fukuri, to live with her father at Okayama-ken.
TEI Fukunan	26	female	Honsairi, Kairamen, Juntan-gun, Zenranando	To live with her husband at Kaminishikawa-machi, Okayama-shi(name, RI Taiho), accompanying 2 children. 10,000 yen to a certain captain.
RI Misako	5	female	Honsairi, Kaira-men, Juntan-gun, Zenranando	Accompanied by mother to live with her father.
RI Ninshu	3	female	Honsairi, kaira-men, Juntan-gun, Zenranando	Accompanied by mother to live with her father.

이름	나이	성별	본적지	도항목적
KO Sanen	23	male	Shokakuri, Betsura-men, Juntan-gun, Zenranando	To find a job and work in Japan, depending upon TAMAGAWA shinkichi in Tokuyama-shi, his elder brother. 2,500 yen to a certain captain.
BOKU Shoshu	27	male	Honcho, Juntan-yu, Juntan-gun, Zenranando	To work again in Japan (former, he had lived in Kagawa-ken). 3,500 yen to a certain captain
RI Tokici	40	male	282, Kakpkuri, Juntanyu, Juntan-gun, Zenranando	To work at NATSUBARA Kinsaku's in Toyama-ken. 4,000 yen to a certain captain.
RI Eishun	24	male	Tokuteiri, Betsuramen, Juntan-gun, Zenranando	To work at RI Kairyu's, his uncle residing at Osaka City. 9,000 yen to a certain captain.
TEI Heiki	36	male	Shinkiri, Rakuan-men, Juntan-gun, Zenranando	To work at TRI Heimatsu's at Nishinari-ku, Osaka-shi (his elder brother). 10,000 yen to a certain captain.

선박 중량은 약 10톤, 엔진은 15마력(세미디젤식). 선장에 관한 정보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선주는 순천읍의 'Shirakawa'라는 인물이다. 승무원 2명은 모두 한국인이고, 승객 52명 중 51명은 한국인, 1명은 일본인이었다.

선박은 같은 달 5일 5시 13분경에 Reisui Port(여수항)를 출발하여 7일 21시에 사가현(佐賀県) 히가시마츠우라군(東松浦郡) 지카무라(ちか村) 지카사키(ちか崎)에서 나포됐다. '위에서 언급된 불법입국자들은 7일 21시 20분에서 8일 2시 30분 사이에 히가시마츠우라 지방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라는 기록에서 볼 때, 탑승자들은 발각된 직후 도주하다 붙잡힌 것으로 보인다. 체포자 대부분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직업을 구하기 위해 도항한 것으로 밝혔고, 선장에게 2천엔에서 1만엔 사이의 운임을 지불한 것으로 진술했다. GHQ/SACP의 문건에는 이들이 모두 추방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외에도 <표 4>와 같이 개별적으로 붙잡힌 순천 출신 '불법입국자' 8명의 기록도 확인된다.

〈표 4〉 개별적으로 체포된 순천 출신자 8명

이름	나이	성별	본적지	도항 목적
BOKU Tenshu	38	male	No.36 Tokuganri, Juntenyu, Junten-gun Zenranando	Paid ₩10,000 for passenger. Has a friend, c/o Shibata in front of Ongagawa Railway Station.
SHIN Itra	31	male	No.106 Kinkokuri, Juntenyu Junten-gun Zenranando	Paid ₩10,000 to a certain crew. Has elder-brother in Osaka.
Kin Genhyo	35		Hon-machi, Junten- yu, Junten-gun, Zenranando	To take Boku Jungo back to Korea. Amount of Fare 8,000.
Tei Do soh	49	male	Tokumokuri, Doshe-men, Junten - gun, Zennan, korea	Paid ₩6000 for passage. Came to Japan to take his son back to Korea. Son(Takewo) lives in komatsu City, Ishikawa Ken.
Go Hei Nin	50	male	Gosenri, Dosha-men, Junten-gun. Zenran. Korea	Paid ₩5000 for passage. His son (Go Ji Nen) living at Amano-machi, Wakayama City, Wakayama Ken. He came to take his son back to Korea.
TEI KOCHIH	27	female	#264 koson-ri, Menjo-men, Muan-gun, Zenranando, Korea	passenger: to see her sick father and to take back her brother residing in Japan: paid ₩5,000 to a Korean broker. Apprehended at 1030 hrs 7 August 1948 near Imafuku Railroad Station, Imafuku-machi Kitamatsuura-gun, Nagasaki-ken.
SEN GAKUI	32	female	Gyokusen-ri, Gyokusen-men, Junten-gun, Zenranando, Korea	due to hard living conditions in Korea tried to join her husband residing In Japan: promised to pay the fare upon arrival in Japan. Apprehended at 0930 hrs 7 August 1948 near Imafuku Railroad Station, Imafuku-machi Kitamatsuura-gun, Nagasaki-ken.
KIN SHUSHI	38	female	Gyokusen-ri, Gyokusen-men, Junten-gun, Zenranando, Korea	due to hard living condition in Korea tried to join her husband residing at #753, 1-chome, Asagaya, Tokyo-to: paid ₩5,000 to a man, apparently a captain. Apprehended at 0930 hrs 7 August 1948 near Imafuku Railroad Station, Imafuku-machi Kitamatsuura-gun, Nagasaki-ken.

IV. 초국경적 10·19 연구의 과제와 방법

GHQ/SCAP 보고서에 ‘불법입국자’로 기재된 여수·순천 사람들의 기록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과 방법이 요청될까. 먼저, ‘불법입국자’ 개개인들의 신원을 파악해야 하는 과제가 쏠린다. 인명,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의 진위여부와 사실관계가 보고서 속 다른 기록들의 신빙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Ritsuson-men(울촌면)을 비롯하여 면 단위의 Seimen(서면), Kairyumen(해룡면), Betsura-men(별량면), Rakuan-men(낙안면), 그리고 동리 단위의 Shinpo-ri(신평리)를 비롯하여 Kinkokuri(금곡리), Shinkiri(신기리), Tokuteiri(덕정리), Senheiri(선평리), chosendo(장천동) 외의 지명에 대한 해독도 필요하다.

<표 1>~<표 4>의 명부는 규슈 각 지역의 경찰이 체포한 밀항자들로부터 수합한 정보를 보고서로 작성, 번역한 것이다. 이는 밀항자들의 한국어 진술이 알파벳으로 표기된 ‘명부’로 번역, 편집되는 과정에 일본 경찰의 취조와 심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록하는 행위가 일본어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명부상의 고유명사, 특히 본적지, 이름과 같이 한자로 이루어진 지명과 인명이 일본어의 음독(音読み)으로 표기된 것을 통해 그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패권국 교체 시기, 밀항자들의 신상정보가 기록되는 과정에 일본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관헌들이 개입되었다는 점은 당장 문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특정 짓는 작업에 걸림돌이 된다. 특히 일본어의 음독 표기 방식으로 기재된 여수·순천 사람들의 이름을 해독하는 작업에 어려움이 따른다. 문건의 1차 해독만으로 체포된 사람들의 이름을 특정짓기 어려운 한계 외에도, 설령 여러 경우의 한자어를 조합하여 특정 인명을 추측해 낸다 하더라도 교차비교의 대상이 전무한 상태에서 밀항자들의 신원을 추적하는 데서는 다시 벽에 부딪힐 수 있다.

흩어진 기호 조각들을 끼워 맞춰 개개인을 특정하는 작업은 제주 출신 ‘불법입국자’ 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필자의 초보적 연구에서도, 알파벳 표기의 일본어 발음과 인명 한자를

조합한 여러 가능성 높은 인명을 본적지별로 정리한 후 강제동원자 명부나 4·3위원회의 ‘희생자’ 명부와 교차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결과, 수명의 신원을 특정한 바 있다.³⁸⁾ 여수·순천 출신 ‘불법입국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작업 역시, 여순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통해 구축될 ‘희생자’ DB와 그것을 구현한 기념공원의 각명비를 비교군으로 활용한다면 ‘불법입국자’ 명부의 진위를 추적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³⁹⁾ 그러할 때, ‘희생자’는 어디까지나 여순사건법과 여순위원회의 신청주의 구조 속에서 생산, 가공된 것임을 동시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여수·순천 사람들의 일본행을 곧바로 피신, 탈출 행위로 단정짓기 어렵다. ‘불법입국자’들의 ‘도항 목적’이 극히 개인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hard living condition’(생활고)만으로는 당시 여수·순천 지역의 정치적 갈등이나 폭력적 탄압의 전조를 직관적으로 읽어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들의 밀항 시도를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의 사회 혼란이나 10·19와 무관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있을까.

개인적 사유의 ‘불법입국’이라는 현상은 같은 시기 일본행을 시도하다 붙잡힌 제주 사람들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영연방 점령군(BCOF)의 보고서 ‘Control of Illegal Entry into Ehime Prefecture’(에히메현으로의 불법 입국 관리)는 48년 10월 5일에서 14일 사이에 에히메현 가와노이시(川之石) 인근에서 나포된 6척의 선박과 거기에 타고 있던 285명의 제주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다. 에히메 경찰이 수합한 제주 사람들의 ‘입국 사유’를 보면, ‘친척을 만나기 위해 온 사람’이 전체 체포자의 40%로

38) 고성만(2022a), 앞의 글.

39) 2023년 1월 2일 현재 여순위원회가 집계한 신고 건수는 진상규명 신고 167건과 희생자·유족 신고 4천862건 등 총 5천29건이다. 진상규명 신고는 전남도 외 타시도 74명을 비롯하여 여수 30명, 광양 28명 순으로, 희생자·유족 신고는 여수 1,173명과 순천 1,147명, 전남도 외 타시도 876명 순으로 집계됐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보도자료, 「전남도, 여순 1019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총력 대응」, 2023.1.3.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 있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조선에 일시 귀향했다가 돌아온 경우, 예전에 일본에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가족을 데려가기 위해, 가족의 성묘/유골 인수, 조선에 친척이 없어서 등으로 진술했다. 이 외에도 경제적 이유를 비롯하여 친구와 지인의 초대, 노동과 학업 등을 합치면 전체의 79%로, 대다수의 ‘불법입국자’가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일본에 입국하려 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자국의 불안정한 상황을 도항 목적으로 진술한 경우는 16%에 불과했다.

이처럼 체포된 제주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대다수가 개인적인 사유로 일본 입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필자의 조사에서는 BCOF의 ‘불법 이민자 명부’에 기재된 285명 가운데 최소 3명이 제주 4·3평화공원의 ‘행방불명자 표식’에서 확인됐다. 그 점에서 일본 경찰에 진술한 ‘도항 목적’(표층)만으로는 해안 봉쇄와 강경진압작전이 임박했던 제주를 탈출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실체(심층)을 오독할 가능성이 크다.⁴⁰⁾ ‘도항 목적’은, 추방과 생사의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이 당면한 목적, 즉 성공적인 입국과 안정적인 정착을 담보 받기 위해 전략적 말하기를 구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대응했을 가능성까지 시야에 넣을 때 비로소 해석의 폭이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⁴¹⁾

「GHQ/SCAP Report 3108」에 기재된 여수·순천 사람들의 일본행은

40) 고성만(2022a), 앞의 글.

41)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밀항자들의 도항 목적은 GHQ/SCAP이 파악한 내용과 미묘하게 다르다. “일본 매일신문(毎日新聞)은 우리 한국인의 일본 밀항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한다. 매년 약 一만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불법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종전후 사세호(仕世保) 송치국(送致局)에서는 三만五천명의 한국인 밀항자를 취급하였다. 그런데 다수 불법 입국자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도 정치적 이유에서 밀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밀항단은 부산(釜山) 서울 기타 주요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에 밀항코저 하는 자는 밀항단과 계약시에 二만원 내지 三만원을 지불하고 밀항 신청자로부터 밀항 경비로 二천원 내지 三천원씩 증수한다. 남한의 일본 도항 동기는 다음과 같은 五종으로 대별할 수 있다. 一.일본인식 생활 방식과 문화의 동(懂)경 二.무역 계약 연락 三.일본이 유기(遺棄)한 한인 재산 처리 四.병역 기피 五.공산당 '체포' 회피.” 「韓人の日本密航 다섯가지 理由있다 日紙報道, 『동아일보』, 1949.9.13.

8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여순사건법이 규정하는 ‘사건’의 시점, 즉 ‘1948년 10월 19일’보다 앞선 것이었다. 법조문대로라면, 공적영역의 과거사 해결 과정에서 그들의 존재와 이동 경험은 ‘여수·순천10·19사건’ 밖에 놓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미 48년 중반 미점령군과 일본 정부는 보다 엄격한 국경 통제를 위해 재입국자에 대해 재판 없는 추방과 ‘외국인’에 대한 강제적인 등록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한반도와 일본의 완전한 분리 정책이며, 공산주의 사상의 봉쇄 정책이기도 했다. 또한 반공의 방파제로서 일본의 역할을 다지기 위한 준비 조치였다고도 할 수 있다.⁴²⁾ 때문에 여수·순천 출신 ‘불법입국자’들의 도향 목적은, 같은 시기 미국 측이 기록한 한반도와 일본, 동북아시아의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여수·순천 사람들의 진술과 겹쳐 읽을 때, 비로소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또한, GHQ/SCAP에 의해 한국으로 추방된 사람들이 그 이후의 ‘진압 과정’이나 ‘전남, 전북, 경남도 일부 지역’을 벗어난 전장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보고서 속 사람들의 기록은 교차 읽기를 통해 좀 더 긴 안목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불법입국자’는, 여순사건법에 따라 진행될 진상조사와 ‘희생자’ DB 구축의 진척 정도에 따라 부상하게 될 ‘희생자’의 면면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점에서 ‘불법입국자’ 명부의 다각적 해석은 ‘희생자’의 공백을 메꾸고, ‘희생자’의 한계를 지적하며, ‘희생자’를 확장하는 작업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국가적, 초지역적 관점을 통한 10·19와 4·3의 공동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체제 전환기의 한일 관계사 및 인구이동사를 재해석할 때 부상하게 될 제주와 여수의 지정학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GHQ/SCAP Report 3108」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여수(항)는 밀항과 밀수의 주요 거점이었고, 이는 4·3과도 밀접하다.

「GHQ/SCAP Report 3108」의 48년 8월 10일자 보고에는, 같은 해 7

42) 유지아, 「한국전쟁 직전, 미국의 동북아 지역질서 재편-GHQ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반공 정책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2-4, 2021.

월 28일 승객 65명과 승무원 7명을 태운 선박이 엔진 고장으로 5일간 표류하다 8월 3일 가고시마의 시모코시키지마(下甕島)에 표착 후 나포됐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일본인 여성 1명을 제외한 64명의 본적지가 Saishu-yu(제주읍)인데, 그들이 탑승했던 배가 바로 여수항을 등록항으로 밝힌 17톤급 ‘Shinpuku Maru’였다. 강경진압작전과 함께 제주 해안이 봉쇄되고 경비가 삼엄해지면서 여수지역의 선박이 밀항의 자원으로 활용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와 물자의 은밀한 이동을 가능하게 했던 사적 경제망과 네트워크의 형성 및 운용이라는 점에서도 제주와 여수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될 수 있지 않을까.⁴³⁾

국가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달리 바깥 혹은 틈새에 끼어 있는 사람들의 다른 환경과 처지를 고려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사’로 수렴되는 ‘사건’이나 ‘희생자’에서 자유로운 질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10·19는 4·3과 별개일 수 없을 것이다. 그 점에서 ‘쌍둥이 사건’이라는 비유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실제의 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공적영역의 과거사 해결에서도 종속적 관계 맺음을 통한 개별적 접근이 아닌, 협업과 교차하는 상상력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일국사적 유산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 또한 4·3과 ‘제주4·3사건’의 ‘과거청산’을 10·19와 그것의 선후관계로 위치 짓기보다는, 제주와 여수·순천을 비롯한 한반도 남부 지역, 그리고 옛 식민지 본국과 동북아시아를 가교하는 트랜스-로컬 역사의 방법론으로 기획되어야 하지 않을까.

43) 문경수·고성만(2022), 앞의 글, 73쪽.

참고문헌

- 고경민,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건과 과제」, 『제주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3.
- 고성만, 「화해와 상생의 (불)가능성에 대하여-제주4·3의 ‘과거청산과 희생자’의 정치학」, 『분단생태계와 통일의 교량자들』, 한국문화사, 2017
- _____, 「KIN Gen-chin 찾기-1948년 영연방 점령군 보고서에 기재된 제주 출신 ‘불법입국자’ 분석」, 『濟州島研究』57, 2022a.
- _____, 「제주 4·3 모델의 (불)가능성과 남은 과제들」, 『창작과비평』 195, 창비 2022b.
- 김동현, 「반공주의와 ‘개발’의 정치학-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민족 문화연구』 65, 2019.
- 김여경, 「조국이란 무엇인가-귀국1.5세 재일탈북자의 구술사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8-1, 2017.
- 문경수, 「4·3과 재일제주인 재론(再論)-분단과 배제의 논리를 넘어」, 『4·3과 역사』 19, 각, 2019.
- 문경수·고성만, 「1948 일본행 엑소더스-연합국 최고사령부 보고서를 통해 본 제주 사람들의 밀항」, 『日本學』 58, 2022.
- 송혜림, 「법은 국가폭력에 대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가-제주 4·3 재심청구 2차 재판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201, 2022.
- 유지아, 「한국전쟁 직전, 미국의 동북아 지역질서 재편-GHQ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반공 정책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2-4, 2021.
- 이재승, 「제주4·3사건, 민족자결권과 저항권」, 『비판적 4·3 연구』, 한그루, 2023.
- 정아영, 「일본의 4·3사건 추도 사업과 재일동포 2세들의 체험과 사상」, 『4·3과 역사』 9·10, 각, 2010.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 제주4·3평화재단, 「재일제주인 4·3피해조사—오사카를 중심으로」, 2014(미간행).
- _____,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 2019.
- 주철희,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완전한 과거사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위한 향후 과제’ 포럼 자료집, 2022.
- 최관호, 「10·19사건법의 내용과 문제점」, 『민주법학』 77, 2021.
- 최환용 외,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
- 伊地知紀子, 「定住と非定住の位相—濟州島からの移動/濟州島への移動とともに—」, 『市大社会学』 8, 2007.
- _____, 「濟州四·三と市民運動—ローカルな和解実践」, 『和解をめぐる市民運動の取り組み—その意義と課題』, 明石書店, 2022.
- 伊地知紀子·村上尚子, 「解放直後·濟州島の人びとの移動と生活史—在日濟州島出身者の語りから」, 『日本帝国をめぐる人口移動の国際社会学』, 不二出版, 2008.
- 梶村秀樹, 「定住外国人としての在日朝鮮人」, 『思慕』 734, 1985.
- 朴沙羅, 『外国人をつくりだす: 戦後日本における「密航」と入国管理制度の運用』, ナカニシヤ出版, 2017.
- Morris-Suzuki, Tessa, Invisible Immigrants: Undocumented Migration and Border Controls in Early Postwar Japan,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006, 32-1.
- _____, “Guarding the Borders of Japan: Occupation, Korean War and Frontier Controls”,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2011, 9-8-3.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보도자료, 「전남도, 여순 1019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총력 대응」, 2023.1.3.
- 제주도 관광교류국 보도자료, 「“4·3 정의로운 해결 재일본 희생자·유족 소외 안 돼”-오영훈 도지사, 통국사 위령비 참배 및 유족 간

- 담회 개최」, 2023.1.30.
- 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 등, ‘제주4·3법 시행령 개정에 즈음한 재일4·3단체 공동기자회견’ 회견문, 2022.3.17.
- 행정안전부, 「제주4·3희생자 보상 실시, 과거사 문제 완결을 위한 한 걸음」, 2021.10.28.
- 「구례 여순항쟁 피해자 2천명 육박」, 『노컷뉴스』, 2022.7.21.
- 「문재인 “4·3사건법 공포…70년 만에 정의실현 다행”」, 『제주의소리』, 2022.1.4.
- 「보상 길 열린 ‘노근리 사건’ 유족 “치유 늦었지만 환영”」, 『한겨레』, 2021.9.29.
- 「비극은 평화와 만나야 한다」, 『한겨레21』 1204호(제주4·3 70년 특집호), 2018.3.26.
- 「오영훈 의원, 마침내 “제주4·3 희생자 보상 규정 담은 ‘제주4·3’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한뉴스』, 2021.10.28.
-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 속도낸다」, 『한국일보』, 2022.1.10.
- 「폭발물에 죽은 10살~13살 꼬마들이 4·3희생자 결정 왜 보류됐나」, 『제주의소리』, 2022.7.22.
- 「韓人の日本密航 다섯가지 理由있다 日紙報道」, 『동아일보』, 1949.9.13.
- 「“65년 만에 형님을 만날 수 있다니 꿈만 같습니다”」, 『제주일보』, 2014.2.23.

Abstract

4·3 and 10·19, Transnational Imagination and Tasks for Comparative Study*

Koh, Sung-man**

In the case of 4·3, the existence and experience of those who sought to smuggle to Japan are not the main concern in solving the past history of the public domain, nor are they included in the definition stipulated by the April 3 Incident Act in a strict sense. Therefore, transnational and diasporic experiences that have been scattered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nation-state have been invisible. The Yeosu-Suncheon Incident Law, which was created by referring to the 4·3 Incident Law, is also likely to follow the boundaries and limitations of the Jeju 4·3 Incident.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of transnational 10·19 research, emphasizing the need for active interpretation and critical analysis of records that demonstrate the movement of the nation-state beyond the boundaries. The report of “illegal entrants” by the Supreme Command of the Allied Powers confirm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eople of Yeosu and Suncheon captured on the coast of Tsushima and Saga Prefecture in August 1948. Considering the different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of people crossing the border, Yeo-Sun 10·19 cannot be separate from Jeju 4·3 in that it gives the opportunity to secure fre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S1A5C2A02093677).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questions in “incident” and “victims” that converge into “Korean histor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ossibility and task of transnational Yeo-Sun 10 · 19 research should be designed as a methodology of trans-local history that bridges Jeju, Yeosu and Suncheo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former colonial homeland and Northeast Asia.

Key-words: 4 · 3, 10.19, Transnational, Illegal Entrants, Comparative Study

논문투고일 2023. 2. 28.

심사완료일 2023. 3. 17.

게재확정일 2023. 3. 22.